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905

발의연월일: 2022. 10. 25.

발 의 자:서범수・강기윤・권명호

김선교 • 김영식 • 김용판

윤영석 • 이달곤 • 이채익

최승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 인을 할 수 있는 '특별한정승인'을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의 인식여부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인식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였고, 이에 따라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왔음.

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미성년상속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정대리인의 착오 또는 법률적 무지 등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

한 상태에서 상속채무를 전부 부담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음.

특히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입법취지가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 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성년상속인이 스스로 법률행 위를 온전히 할 수 있을 때 별도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미성년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미성년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020조 제2항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20조의 제목 중 "기간"을 "특칙"으로 하고, 제1020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만료 당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승인(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하였을 때라도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.

제1030조제1항 중 "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"을 "제1019조제1항, 제3항 또는 제1020조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019조제3항"을 "제1019조제3항 또는 제1020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1034조제2항 본문 중 "제1019조제3항"을 "제1019조제3항 또는 제102 0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1038조제2항 후단 중 "제1019조제3항"을 "제1019조제3항 또는 제102 0조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) ①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0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기간이 이미 진행 중인 상속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1020조제2항의 개정규 정의 기간이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20조(제한능력자의 승인·포기	제1020조(제한능력자의 승인·포기
의 <u>기간</u>) (생 략)	의 <u>특칙</u>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
	부분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만료
	당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
	우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
	인이 단순승인(제1026조제1호
	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
	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
	함한다)을 하였을 때라도 성년
	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
	승인을 할 수 있다.
第1030條(限定承認의 方式)① 相	第1030條(限定承認의 方式) ①
續人이 限定承認을 함에는 <u>제1</u>	<u>제1</u>
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期間	019조제1항, 제3항 또는 제1020
內에 相續財産의 目錄을 添附	조제2항
하여 法院에 限定承認의 申告	
를 하여야 한다.	
② <u>제1019조제3항</u> 의 규정에 의	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1020
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	<u> 조제2항</u>
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	
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	
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	

第1034條(配當辨濟) ①(생 략)

-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.
- 第1038條(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章 책임) ① (생 략)
 - ② 제1항 전단의 境遇에 辨濟를 받지 못한 相續債權者나 遺贈 받은 者는 그 事情을 알고辨濟를 받은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.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

) ① (현행과
같음)	
② 제1019조제3형	<u>당 또는 제1020</u>
조제2항	
第1038條(부당변제	•
책임) ① (현행과 ②	
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- 같음) 제1019조제3항

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